

◇ 시설급여 (1일)

구 분		1등급	2등급	3등급
요 양 급 여	노인요양시설(개정법)	90,450	83,910	79,240
	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	72,480	67,250	62,000
비 급 여	상급침실 이용료	1인당 20,000원		
	식재료비(1식)	3,300원		
	간식비(1회)	1,000원		
	이/미용료등	1회 10,000원(미용실 이용 시)		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< (안내)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>

구분	시설급여	재가급여
일반	20%	15%
기초수급권자	0%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화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	12%	9%
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8%	6%

※ 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2.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